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02일

다산동장  인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60-11-2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2-08-02